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이란 별표 3 제1호다목3)에 따른”을 “이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 “사본을”을 “사본과 시설의 명세서를”로 한다.

제8조의4부터 제8조의6까지를 각각 제8조의5부터 제8조의7까지로 하고,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시설기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된 공간으로서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을 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혼합·소분의 행위가 맞춤형화장품의 품질·안전 등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된 것으로 본다.

제8조의6(종전의 제8조의5) 제1항 중 “포함한다)를”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조의5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3조의5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

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전문의의 진단서

2. 법 제3조의5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제8조의7(중전의 제8조의6) 중 “자격시험”을 “자격시험의 관리 및 자격
증 발급 등의”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자 간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심사
를 받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제2
호의 첨부서류를 갈음하여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를 “제1항, 제3항 또는”으로
한다.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3항”을 “법 제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를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5조제4항”을 각각 “법 제5
조제5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5조제4항”을 각각 “법 제5
조제5항”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맞춤형화장품의 원료목록 보고)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맞춤

형화장품판매업자는 지난해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화장품업 단체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5항”을 “법 제5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6항”을 “법 제5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7항”을 “법 제5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5조제8항”을 “법 제5조제10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2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마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라목·마목”을 “·라목·바목”으로 한다.

마. 법 제15조제10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제19조제4항제8호가목 중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만”을 “만”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화장품 1차 포장 기재의무 제외 대상)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말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 제32조”를 “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화장품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6호의2서식, 제6호의5서식 및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제19조제3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 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나.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

다.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할 것

2. 그 밖에 화장품의 안전정보와 관련하여 기재·표시하도록 화장품의 유형별·함

유 성분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행정처분의 기준 (제2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최대기간은 12개월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와 품목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기간이 품목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을 때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고, 업무정지 기간이 품목정지 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업무정지처분과 품목업무정지처분을 병과(併科)한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이 표 제2호의 개별기준 머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의 적용일은 최근에 실제 처분을 받은 날(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과징금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품목업무정지의 경우 품목이 다를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마.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사항의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그 최대기간은 12개월로 한다.
- 바.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가 3차 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 화장품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 아. 영 제2조제2호라목의 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판매금지”는 “수입대행금지”로, “판매업무정지”는 “수입대행업무정지”로 본다.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1)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국민보건, 수요·공급,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나)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다) 광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회사 또는 광고매체에서 무단 광고한 경우
- 2)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는 경우
- 가) 기능성화장품으로서 그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원료의 함량 미달의 원인이 유통 중 보관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성분의 변화 때문이라고 인정된 경우
- 나) 비병원성 일반세균에 오염된 경우로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으며, 유통 중 보관상태 불량에 의한 오염으로 인정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내용	관련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다음의 변경 사항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	시정명령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5일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5일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
1)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또는 그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의 변경					
2)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제조업무정지 1개월	제조업무정지 3개월	제조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		판매업무정지 1개월	판매업무정지 3개월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		시정명령	판매업무정지 7일	판매업무정지 15일	판매업무정지 1개월

5) 제조 유형 변경	법 제24조제1 항제2호	제조업무정 지 1개월	제조업무 정지 2개월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제조업무정 지 6개월
6) 영 제2조제2호가목부 터 다목까지의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의 책임판매 유형 변경		경고	판매업무 정지 15일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판매업무정 지 3개월
7) 영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 록한 자의 책임판매 유형 변경		수입대행업 무정지 1 개월	수입대행 업무정지 2개월	수입대행 업무정지 3개월	수입대행업 무정지 6 개월
나.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 우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 또는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의 전부가 없는 경우		제조업무정 지 3개월	제조업무 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제6조제1항에 따른 작업소, 보관소 또는 시험실 중 어느 하나 가 없는 경우		개수명령	제조업무 정지 1개월	제조업무 정지 2개월	제조업무정 지 4개월
3) 제6조제1항에 따른 해당 품목의 제조 또 는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중 일부 가 없는 경우		개수명령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 지 4개월
4)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장품을 제조하 기 위한 작업소의 기 준을 위반한 경우					
가) 제6조제1항제1호		시정명령	제조업무	제조업무	제조업무

가목을 위반한 경우			정지 1개월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나) 제6조제1항제1호나 목 또는 다목을 위 반한 경우		개수명령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 지 4개월
다. 법 제3조의2제1항 후 단에 따른 맞춤형화장 품판매업의 변경신고 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2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자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판매업무 정지 5일	판매업무 정지 15일	판매업무정 지 1개월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소 상호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판매업무 정지 5일	판매업무 정지 15일	판매업무정 지 1개월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소 소재지의 변경신고 를 하지 않은 경우		판매업무정 지 1개월	판매업무 정지 2개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판매업무정 지 4개월
4) 맞춤형화장품조제관 리사의 변경신고를 하 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판매업무 정지 5일	판매업무 정지 15일	판매업무정 지 1개월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제3조제1 항 또는 제3조의2제1 항에 따른 등록·변경 등록 또는 신고·변경 신고를 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2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마.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 매업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3	시정명령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영업소 폐쇄
바. 법 제3조의3 각 호의	법 제24조	등록취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				
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化粧품을 제조·수입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4호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등록취소
아. 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를 받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능성化粧품을 판매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5호				
1) 심사를 받지 않은 기능성化粧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등록취소	
2) 보고하지 않은 기능성化粧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판매업무 정지 9개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자.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5호의2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차.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6호				
1) 제11조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제조 또는 해당품목 제조업무 정지 15일	제조 또는 해당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월	제조 또는 해당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2) 제11조제1항제2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나) 작성된 제조관리기준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제11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제12조제1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별표 1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나) 별표 1에 따른 품질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판매업무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판매업무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판매업무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9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 등록취소
--	---	---	---	--

관리 업무 절차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정지 12개월	
다) 별표 1에 따라 작성된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
라) 그 밖에 별표 1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7일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6) 제12조제2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별표 2에 따라 책임 판매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
나) 별표 2에 따른 안전관리 정보를 검토하지 않거나 안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
다) 그 밖에 별표 2에 따른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7) 그 밖에 제12조제3호	시정명령	판매 또는	판매 또는	판매 또는

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6개월
8)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소분한 경우		판매업무정 지 15일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판매업무정 지 6개월
9) 제12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15일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6개월
10) 제12조의2제3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6개월
11) 제12조의2제4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7일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1개월
12) 제12조의2제5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6개월
카. 법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대상 화장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	법 제24조제1 항제6호의2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1개월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6개월	등록취소

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타. 법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6호의3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1개월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6개월	등록취소
파. 법 제9조에 따른 화장품의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8호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하. 법 제10조 및 이 규칙 제19조에 따른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의 기재·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9호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가격은 제외한다)의 전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가격은 제외한다)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가격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거. 법 제10조, 이 규칙 제19조제6항 및 별표 4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표	법 제24조제1항제9호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3개월	
너. 법 제12조 및 이 규칙 제21조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상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9호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더.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광고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0호				
1) 별표 5 제2호가목·나목 및 카목에 따른 화장품의 표시·광고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광고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광고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9개월(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9개월(광고위반)	
2) 별표 5 제2호다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의 표시·광고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광고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4개월(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광고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광고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2개월(광고위반)
러. 법 제14조제4항에 따	법 제24조	해당 품목	해당 품목	해당 품목	

른 중지명령을 위반하여化粧품을 표시·광고한 경우 며.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다음의化粧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 1)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變敗)되거나 이물질이 혼입 또는 부착된化粧품 2) 병원미생물에 오염된化粧품 3)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化粧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化粧품 4)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사용기준을 위반한化粧품 5) 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통화장	제1항제10호 법 제24조 제1항제11호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9개월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9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해당 품목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등록취소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	--------------------------------------	--	---	--	--

품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가)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내용량의 97퍼센트 미만인 화장품 (1)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내용량의 90퍼센트 이상 97퍼센트 미만인 화장품 (2)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내용량의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인 화장품 (3)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내용량의 80퍼센트 미만인 화장품 나) 기능성화장품에서 기능성을 나타내게 하는 주원료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부족한 경우 (1) 주원료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경우 (2) 주원료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경우	시정명령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4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4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4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4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	---	---	--	--

가)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내용량의 97퍼센트 미만인 화장품

(1)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내용량의 90퍼센트 이상 97퍼센트 미만인 화장품

(2)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내용량의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인 화장품

(3)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내용량의 80퍼센트 미만인 화장품

나) 기능성화장품에서
기능성을 나타내게
하는 주원료의 함량
이 기준치보다 부족
한 경우

(1) 주원료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0퍼센
트 미만 부족한 경
우

(2) 주원료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경우

시정명령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4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4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
지 6개월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

		정지 1개월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정지 12개월
다) 그 밖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한다)을 위조·변조한 화장품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7) 그 밖에 법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버. 법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질문·수거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2호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1개월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6개월	등록취소
서. 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 또는 제2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검사명령·개수명령·회수명령·폐기명령 또는 공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3호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1개월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6개월	등록취소
어.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3호의2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1개월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6개월	등록취소

저.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로서	법 제24조제1 항제14호				
1) 업무정지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한 경우 (광고 업무에 한정하여 정지를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등록취소			
2) 광고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광고 업무를 한 경우		시정명령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한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책임판매업소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책임판매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책임판매 유형			
제조업 겸업 여부			

「화장품법」 제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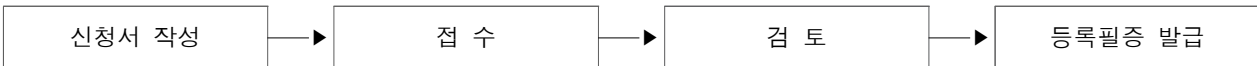
신청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분	첨부서류	수수료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금액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한시적 영업의 신고는 7일)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 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상호	법인등록번호(법인만 기재합니다)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	상호		
	주소	전화번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 인등록번호	자격증번호
다른 영업의 영위 여부	[] 화장품책임판매업 [] 화장품제조업		
영업의 기간 (한시적 영업의 경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화장품법」 제3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분	첨부서류	수수료
신고인 제출서류	1.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증 사본 2. 시설의 명세서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한시적 영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필증 발급
--------	---	-----	---	-----	---	---------

신고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10mm×297mm[백상지(80g/㎡)]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 발급 []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발급 30일 재발급 15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발급	응시번호		응시년월일
[] 재발급	신청사유	[] 훼손 [] 분실	
	자격증 번호 (훼손만 기재합니다)		발급연월일 (훼손만 기재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6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구분	첨부서류	수수료
발급	1. 「화장품법」 제3조의5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법 제3조의5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전문의의 진단서 2. 「화장품법」 제3조의5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금액
재발급	1.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 자격증을 못 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자격증 발급
--------	---	-----	---	-----	---	--------

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 의뢰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가. 원료의 규격 중 시험방법 변경, 효능·효과 변경(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 제외), 기준 및 시험방법(pH 및 메탄올 제외) 변경의 경우: 60일 나. 가목 외의 변경사항의 경우: 15일
------	-----	-----	------	--

신청인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인)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등록번호(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만 해당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 내용			
항목	심사받은 사항	변경심사 신청사항	사유

「화장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능성화장품의 변경심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먼저 발급받은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2.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금액

처리 절차			
변경심사의뢰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
검 토	→	변경심사결과통지서 발급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한함)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화장품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7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 양도·양수하려는 해당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행정처분만 해당합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자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가목 표의 처분받은 날 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가목 및 나목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화장품법」 제26조의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해당 기능성화장품 관련 행정처분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맞춤형화장품의 제외 대상) 법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서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별표 3 제1호다목3)에 따른 화장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말한다.	제2조의2(맞춤형화장품의 제외 대상) ----- ----- -----이란 ----- ----- -----. -----.
제8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① 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한다)가 판매업소로 신고한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같은 영업을 하려는	제8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① ----- ----- ----- ----- ----- -----사본과 <u>시설의 명세서를</u> ----- ----- -----. ----- ----- ----- -----

경우에는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에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② ~ ④ (생략)

<신설>

제8조의4 (생략)

제8조의5(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4(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시설기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된 공간으로서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을 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혼합·소분의 행위가 맞춤형화장품의 품질·안전 등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된 것으로 본다.

제8조의5 (현행 제8조의4와 같음)

제8조의6(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①

호의5서식의 맞춤형화장품조제
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
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하
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제8조의6(시험운영기관의 지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시험운
영기관을 지정하거나 시험운영
기관에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
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해야 한다.

제9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①

----- 포함하
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
-----.

1. 법 제3조의5제1호 본문에 해
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3조의5제1호 단서
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
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전문의
의 진단서

2. 법 제3조의5제3호에 해당되
지 않음을 증명하는 최근 6개
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7(시험운영기관의 지정
등) -----

---- 자격시험의 관리 및 자격
증 발급 등의 -----

-----.

제9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은 자 간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권리를 양
도·양수하여 제1항에 따른 심
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갈음하여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능성화장품 변
경심사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
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2. (생 략)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

-----.

다만,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
은 자 간에 법 제4조제1항에 따
라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첨부서류를
갈음하여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한 후 심사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9호서식의 기능성화장품 심사·변경심사 결과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⑥ (생 략)

제12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맞춤형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 발생사례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에게 보고할 것

제13조(화장품의 생산실적 등 보고) ① 법 제5조제4항 전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지난해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1항, 제3항 또는 -----

-----.

1. ~ 4.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조제4항-----

-----.

1. ~ 4. (현행과 같음)

5.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

제13조(화장품의 생산실적 등 보고) ① 법 제5조제5항 -----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대한화장품협회 등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화장품업 단체(「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약업단체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化粧品の 제조過程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化粧品の 유통・판매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생략)

<신설>

제14조(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

-----.

② 법 제5조제5항 -----

-----.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맞춤형化粧品の 원료 목록 보고)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맞춤형化粧품판매업자는 지난해에 판매한 맞춤형化粧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화장품업 단체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

육) ①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1. 2. (생략)

②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교육 명령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로 한다.

1. ~ 5. (생략)

③ ~ ⑤ (생략)

⑥ 법 제5조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2. (생략)

⑦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은 화장품과 관련된 기관·단체 및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⑧ ~ ⑬ (생략)

육) ① -----
----- 법 제5조 제7항-----
-----.

1.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조제8항-----

-----.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5조제9항-----

-----.

1. ~ 2. (현행과 같음)

⑦ 법 제5조제10항-----

-----.

⑧ ~ ⑬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회수 대상 화장품의 기준 및 위해성 등급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 대상 화장품(이하 “회수대상화장품”이라 한다)은 유통 중인 화장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으로 한다.

1. (생략)
2. 법 제15조에 위반되는 화장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
가. ~ 라. (생략)

<신설>

마. (생략)

3. (생략)

②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회수대상화장품의 위해성 등급은 그 위해성이 높은 순서에 따라 가등급, 나등급 및 다등급으로 구분하며, 해당 위해성 등급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략)
2. 위해성 등급이 나등급인 화장품: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제14조의2(회수 대상 화장품의 기준 및 위해성 등급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법 제15조제10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바. (현행 마목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항 제2호다목2)(기능성화장품의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경우는 <u>제외한다</u>)에 해당하는 화장품 3. 위해성 등급이 다등급인 화장품: 제1항제2호가목·나목·다목2)(기능성화장품의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경우만 <u>해당한다</u>)·라목·마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맞춤형화장품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 1. ~ 7.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	----- ----- ----- ----- <u>제외한다</u>)·마목 ----- 3. ----- ----- ----- ----- ----- ----- <u>·라목·바목</u> ----- -----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 ----- ----- -----
---	--

가. <u>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u> <u>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u> <u>제품류인 경우</u> 나. (생략) ⑤·⑥ (생략) <u><신설></u>	가. <u>만</u> ----- ----- ----- 나.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u>제19조의2(화장품 1차 포장 기재</u> <u>의무 제외 대상) 법 제10조제2</u> <u>항 단서에서 “고형비누 등 총리</u> <u>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화</u> <u>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u> <u>누)를 말한다.</u>
제32조(수수료) ① <u>법 제32조에</u> <u>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9와</u> <u>같다.</u> ② (생략)	제32조(수수료) ① <u>법 제32조제1</u> <u>항-----</u> -----. ② (현행과 같음)